재개발사업 절차

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오후 10:41

재개발사업 추진 절차



• 위 그림은 조합시행의 경우와 조합 외 시행의 경우 2가지로 나뉜다.

• 사업절차

- 1. 계획수립(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, 정비계획)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
- 2.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 시작
- 3. 분양절차를 거침
- 4.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음.
- 5. 철거, 착공 시작
- 6.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인가되면 1)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을 완료.
 - 1) <u>이전고시</u>: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 => 소유권 취득,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, 청산금의 지급 등.

1.계획수립	1.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
	2.정비구역 지정

2.사업시행계획	1.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
	2.창립총회
	3. 조합설립인가
	4.사업시행계획인가
	5. 이주대책
3.분양 및 관리처분	1.분양공고 및 신청
	2. 관리처분계획인가
	3.철거 및 착공
4. 사업완료	1.준공인가
	2. 이전고시
	3.청산
	4. 조합해산